[학칙] 신구조문대비표

입안부서	제정(개정)이유	현 행	개 정 안	비고
교무처 학사팀	- 대학제도 개선(학사제도) 정책연구 반영	**제10조(학기)** ①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(전공),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. 1. 제1학기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. 제2학기: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	**제10조(학기)** ① 학년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과(전공),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1. 제1학기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. 제2학기: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	
	- 대학제도 개선(학사제도) 정책연구 반영	**제31조(교육과정)** ① ~ ⑤ (생략) ⑥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 중 일부는 원격 교과목과 지역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, 원격 교과목과 지역 연계 교과목의 지정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**제31조(교육과정)**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목 중 일부는 원격 교과목과 지역 연계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. 원격 교과목의 지정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 교과목 및 수업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, 지역 연계 교과목의 지정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
	- 대학제도 개선(학사제도) 정책연구 반영	**제36조(수업의 방법 등)**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집중수업,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(이하 "원격수업"이라 한다),, 현장수업,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학과의 수업은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. ③ 제1항의 원격수업에 의한 수업의 운영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지원형 원격수업 :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심사를 통해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된 원격수업을 지칭 2. 자율형 원격수업 : 교과목별 담당 교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원격수업을 지칭	**제36조(수업의 방법 등)** 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② <삭제> ③ <삭제>	

입안부서	제정(개정)이유	현 행	개 정 안	비고
		④ <신설>	④ 교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 제34조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수업일수를 단축하고 집중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.	
		⑤ <신설>	⑤ 학생의 전공, 학년 학위과정에 따라 학기의 기간을 달리 정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.	
		⑥ <신설>	⑥ 재난의 발생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 수업 등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	
	- 대학제도 개선(학사제도) 정책연구 반영	제36조의2(이동수업) 대학 소재지 출석수업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이동수업의 대상·기준·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내에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이동수업을 할 수 있다. ① <신설>	제36조의2(학교 밖 수업) 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. ② 이동수업은 대학 소재지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의 장소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수업을 말하며, 이동수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. 1.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학생 2. 국가대표 선수, 군인 등 직업 특성상 통학이 어려운 학생 3.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실습학기제에 참여 중인 학생	
		② <신설>		
		③ <신설>	③ 협동수업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현장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산업체 및 연구기관, 지방자체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시설, 장비, 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밖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. 협동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점 인정범위는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.	
		④ <신설>	④ 학교 밖 수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	
		<신설>	**부칙<2024. 00. 00.>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